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9090 제출연월일: 2025. 3. 19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원로 체육인을 지원하는 경우 그 대상자 선정,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체육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"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"를 "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"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"대통령령으로"를 "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장학사업) ① (생 략)	제10조(장학사업) ① (현행과 같
	승)
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대상	2
자 선정, 지급 기준 등 필요한	
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	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
정한다.	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-
제11조(원로 체육인 지원) ① (생	제11조(원로 체육인 지원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	②
정 및 그 지급 기준 등에 관하	
여 필요한 사항은 <u>대통령령으로</u>	<u>대통령령 또</u>
정한다.	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